

2019. 6.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1. 서명의원 명부 1부.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권 영 식 의원
외 5인
(발의자 서명 별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6. . (제 회)

의결사항	
------	--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영식 의원 외 5 명
발의연월일	2019. 6. .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 조례명 :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19. 6. .

발 의 자 : 권영식, 박중무,
임재진, 배몽희,
정봉훈, 장진영
의원

1. 제안이유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합천군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복구입비를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복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교 신입생으로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학교 신입생에게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비용조달방안 참조

다. 기 타

1) 조 례 안: 별첨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2019. . . ~ . .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합천군 소재 학교 신입생”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0일 이후 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학교 배정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u>합천군 소재 학교 신입생</u>으로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 ----- ----- ----- ----- <u>학교에 입학하는 학생</u>으로 한다.</p>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 조례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함

나. 추계의 내역

○ 총 소요액 : 750,000천원(군비750,000천원)

- 550명(중·고등학교 입학생) × 300천원(지원금) = 165,000천원
- 165,000천원 × 5년 = 825,000천원

다.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국비						
	도비						
	군비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소계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세입	국비						
	도비						
	군비						
	소계						

라. 재원조달 방안 : 붙임

3. 작성자 :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 규 진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지방세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우리군 자체사업인 지방세 수입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합의되었음

5. 작 성 자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 규 진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